

<p>4. 1993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同意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</p> <p>(17時 14分)</p> <p>○議長 金瓏會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1993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同意案을 上程합니다. (議事棒 3打)</p> <p>都市整備委員會 金孝善議員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金孝善議員 都市整備委員會所屬 金孝善議員입니다. 방금 通過된 建築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해서 잠깐 제가 本 案件을 審査報告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說明을 드리겠습니다. (場內騷亂)</p> <p>○議長 金瓏會 조용히 해 주세요.</p> <p>○金孝善議員 방금 問題되었던 區域別로 市長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 部分은 風致地區, 美觀地區, 施設保護地區 등 別途로 指定된 경우에 한하여서 地區指定 目的에 맞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市長이 마음대로 어떤 權限을 濫用할 수 있는 소지는 排除되어 있는 事項입니다. 그러니까 議員님들께서 이 點을 理解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그 事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. 죄송합니다.</p> <p>존경하는 議長님,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, 本議員이 第61回 臨時會 第1次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査한 1993年度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同意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</p> <p>이번 市長이 管理計劃 變更에 대한 同意를 要求해 온 財産은 蘆原區 上溪5-2 再開發區域內 土地로서 總 18필지 1,251㎡로서 이는 1992年 4月 27日 우리 議會에서 1992年度 市有財産管理計劃으로 同意하였던 財産입니다. 그러나 上溪5-2 再開發區域의 事業施行者가 大韓住宅公社로 決定됨에 따라 住宅公社는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第8項에 行政廳으로 規定되어 있어 1992年度 賣却하기로 同意하였던 再開發區域內 市有地 財産을 住宅公社에 無償으로 歸屬되도록 당초 計劃을 變更하고자</p>	<p>하는 事項입니다. 이는 地方財政法과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 등 關係法規에 合當하다고 認定되어 우리 委員會에서는 市長의 變更計劃 同意案대로 同意하기로 하였습니다.</p> <p>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再開發事業 施行者인 住宅公社에 市有財産을 無償으로 歸屬시켜 주어 再開發事業의 活性化를 기대하는 많은 市民의 기대에 맞도록 우리 委員會에서 議決한 案대로 1993年度 市有財産管理計劃이 變更同意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</p> <p>감사합니다.</p> <p>○議長 金瓏會 그러면 1993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同意案에 대해서 議員 여러분, 異議 없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</p> <p>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 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'93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</p> <p>'93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인 주택개발재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상계5-2 재개발구역내 종전의 공공시설인 사유지를 주택개발재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게 무상양여(귀속)하여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 내용으로 하는 '93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.</p> <p>○'93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계상재산 · 양여 1건 토지 18필지 1,251㎡</p> <p>'93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(추가)안</p> <p>○목 적</p> <p>'93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집행함에 있어 도시계획사업인 주택개발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수요에 적기 공급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</p>
---	--

○당 초				
구 분		건수·동수	면 적(㎡)	금액(천원)
취 득		건물 6	1,508	70,895,000
매 각		토지 10	229,303.4	63,829,886
○변 경(추가)				
구 분		건수·동수	면 적(㎡)	금액(천원)
처 분	양 여	토지 1	1,251	870,116
○변 경 후				
구 분		건수·동수	면 적(㎡)	금액(천원)
취 득		건물 6	1,508	70,895,000
처 분	매 각	토지 10	229,303.4	63,829,886
	양 여	토지 1	1,251	870,116
'93시유재산 관계계획변경(추가) 재산현황				
○총 대 상 : 18필지 1,251㎡ 870,116천원				비 고
○계 : 18필지 1,251㎡ 870,116천원				
양 여	(도시계획사업시행자)	(국가및 지방자치단체) 대한주택공사 18필지 1,251㎡	중전의 국공시설인 시유지 를 도시계획법 제83조 1항 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	
(다음 페이지에 계속)				

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93년도관리계획변경계획총괄표(6-1)											
(단위: m ² , 천원)											
구분	상반기			하반기			합계			비고	
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	
취	토지										
	건물										
	기타										
부	토지										
	건물										
	기타										
제	토지	1	1,251			870,116			1	1,251	870,116
	건물										
	기타										
지	토지										
	건물										
	기타										
분	토지	1	1,251			870,116			1	1,251	870,116
	건물										
	기타										

'93 시유재산 양여대상 재산목록(6-5)

회계명 : 주력재개발비

단위 : m, 천원

일련 번호	지 목	재 산 포 시		양여대상 수 량	과포또는 평 가 액	양여시기	양 여 사유	양여대상자	비 고
		소 재 지	일단의면적						
1	공 원	노원구 상계1동 1098-10	110	110	67,320	상반기	재개발구역내	대한주택공사	도시계획법 제83조1항
2	전	" 1107-101	5	5	3,275	"	중전의공공시설	"	"
3	"	" 1107-112	539	539	420,420	"	"	"	"
4	잡종지	" 1111-4	7	7	5,810	"	"	"	"
5	"	" 1111-19	299	299	195,845	"	"	"	"
6	"	" 1111-65	19	19	12,445	"	"	"	"
7	"	" 1111-89	23	23	15,065	"	"	"	"
8	"	" 1111-120	3	3	1,842	"	"	"	"
9	"	" 1111-172	19	19	11,666	"	"	"	"
10	"	" 1111-188	10	10	5,760	"	"	"	"
11	"	" 1112-2	3	3	1,842	"	"	"	"
12	"	" 1112-11	163	163	100,082	"	"	"	"
13	대 지	" 1114-73	5	5	2,860	"	"	"	"
14	"	" 1114-112	7	7	4,298	"	"	"	"
15	"	" 1114-118	5	5	2,860	"	"	"	"
16	"	" 1114-119	12	12	6,864	"	"	"	"
17	"	" 1114-120	3	3	1,716	"	"	"	"
18	도로	" 1146-4	19	19	10,146	"	"	"	"
	계	18 필 지	1,251	1,251	870,116				